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결정 공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을 공고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라656 소송허가사건

2015라657(병합) 소송허가사건 2015. 11. 16.자 결정

2015. 11. 17.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재판장 판사 최완주

서울고등법원

제 25 민사부

결정

사건	2015라656 소송허가사건 2015라657(병합) 소송허가신청
대표당사자, 항고인	1. 양일남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67, 215동 1502호 (장안동, 래미안 장안2차아파트) 2. 최영미 김포시 김포한강2로 168, 104동 901호 (장기동, 고창마을신영 지웰아파트) 대표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상원, 김주영, 전영준, 송성현)
피고, 상대방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The Royal Bank of Canada)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베이스트리트 200 (200 Bay Street, Toronto, Ontario, Canada) 대표자 사장 고든 엠 닉슨(Gordon M. Nix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이혜광, 정진영, 이상윤, 박철휘, 은정민, 고태혁
총원의 범위	한화증권 주식회사가 2008. 4. 25.경 발행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

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를 매수하였다가 만기에 상환받은 사람들

제 1 심 결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자 2010카기9474, 2012카기2082(병합) 결정

환송전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 5. 31.자 2012라764, 2012라765(병합) 결정

환 송 결 정 대법원 2015. 4. 9.자 2013마1052, 2013마1053(병합)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대표당사자들은 제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9676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하여도 소송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소송의 피고인 한화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대표당사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기9474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이하 '이 사건 허가대상사건'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하였고,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증권'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2082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9676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신청

을 하였는데, 위 허가신청 사건들이 병합되었다. 위 법원은 201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 2012가합509676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관하여 각 소송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표당사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2라764, 2012라765(병합)호로 항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31.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대표당사자들은 다시 대법원 2013마1052, 2013마1053(병합)호로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4. 9. 항고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한화증권은 2008. 4. 25.경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보통주와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 한다)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10호'(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3개월 단위의 조기 및 만기 상환기준일에 두 기초자산 모두의 종가가 상환기준가격(포스코 보통주는 494,000원, 에스케이 보통주는 159,5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3개월 단위로 기준가격의 90%, 85%, 80%, 7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결정되면 액면금에 연 22%의 수익금을 더하여 상환하고, 두 종목 중 하나라도 만기 상환기준일의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가격 미만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보게 설계된 상품이다.

나. 한화증권은 2008. 4. 25.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과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내용의 스와프(Swap)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총 발행규모는 687,660개, 총발행액은 6,876,600,000원(개당 액면금 10,000원), 총 투자자는 약 437명이다. 대표당사자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그

발행일 무렵에 한화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상환기준일인 2009. 4. 22. 에스케이 보통주는 만기 상환기준가격(기준가격의 75%인 119,625원) 이상인 120,000원에서 124,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장 종료 무렵에 보유하고 있던 에스케이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라고 한다), 그 결과 에스케이 보통주의 종가는 119,000원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대표당사자들 비롯한 투자자들은 만기일인 2009. 4. 27. 이후 한화증권으로부터 만기상환금으로 투자금의 약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았다.

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집단소송법

제3조(적용 범위)

-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소송허가 요건)

-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5조(소송허가 결정)

-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대표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는 기초자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허가대상사건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집단소송법 제11조, 제12조의 요건도 충족되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를 구한다(대표당사자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허가대상사건의 청구가 집단소송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자본시장법 제17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4. 판단

가.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법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량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집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반면 개별 피해자의 손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함과 아울러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1호),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표시의 사용(2호), 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허위시세 이용(3호) 등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투자

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등 참조). 특히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목적, 조문 체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 그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그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의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투자자는 그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은 투자자에게 상

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기초자산인 에스케이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당사자들의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만이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 당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자들은 단순히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로 인하여 증권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당사자들의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단소송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소송허가절차와 본안소송절차를 분리하고 있고, 소송허가절차는 그 소송이 집단소송이라는 특수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은 소송허가절차의 심리대상이 아니다. 다만 본안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주장 자체로 집단소송법 제3조가 규정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다.

그런데 집단소송법 제3조가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이에 유인되어 새로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만 자본시장법 제179조가 적용된다

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거래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보유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179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양자의 견해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학설상으로도 자본시장법 제179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견해만이 옳다고 전제하여 자본시장법 제128조의 부정거래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보유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9조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정취지, 부정거래행위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들의 청구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추후 본안소송인 이 사건 허가대상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일 뿐 소송허가 단계에서 심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단소송법 제11조의 요건 충족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의 거래로 인하여 대표당사자 양일남은 1,000만 원, 대표당사자 최영미는 1,700만 원의 투자손실을 입은 사실이 소명되고, 달리 대표당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대표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 및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을 소유하거나 그와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없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대표당사자들과 그 소송대리인에게 집단소송법 제 11조가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대표당사자들이 이 사건 허가대상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개별 소송을 제기하여 '사전적 제외신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여야 하는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송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결정 이후 대표당사자들을 포함한 142명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14나5540호 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2012가합57175호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 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다. 또한 제외신고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28조는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되고, 제외신고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허가 결정 확정 이전에 개별 소송을 제기한 자도 제소기간 만료 전까지 개별 소송을 취하하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대표당사자에게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어 그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 구성원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가 가능하다(집단소송법 제22조 제1항, 제24조). 따라서 대표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 단계에서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여야 하는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집단소송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 집단소송법 제12조 요건의 충족 여부

이 사건 허가대상사건의 구성원은 약 437명이고, 피고의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 당시 구성원이 보유하는 증권 합계는 발행증권의 100%에 이른다. 이 사건 허가대상사건의 법률상·사실상 쟁점은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를 이유로 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로서,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하였

고, 구성원 1인당 손해액이 약 745만 원(청구금액 3,259,508,400원을 총원 인원수 약 437명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여 개별 소송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집단소송이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집단소송을 불허해야 할 정도의 흠결은 없다.

피고는, 대표당사자들이 보유한 추가연계증권은 한화증권이 발행한 것이지 피고가 발행한 것이 아니어서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단소송법 제3조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증권신고서의 신고인(즉 당해 증권의 발행인) 이외에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등도 손해배상의무자로 명시하고 있다. 집단소송의 피고가 반드시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증권발행회사가 피고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피고 회사'는 '증권발행 회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표당사자들이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발행증권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집단소송법 제12조의 요건을 갖추었다.

라. 소결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그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대표당사자들의 이 사건 집단소송허가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기로 한다.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1. 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3,259,5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증권'이라 한다)는 2008. 4. 25.경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보통주와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 한다)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10호'(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3개월 단위의 조기 및 만기 상환기준일에 두 기초자산 모두의 종가가 상환기준가격(포스코 보통주는 494,000원, 에스케이 보통주는 159,5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3개월 단위로 기준가격의 90%, 85%, 80%, 7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결정되면 액면금에 연 22%의 수익금을 더하여 상환하고, 두 종목 중 하나라도 만기 상환기준일의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가격 미만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보게 설계된 상품이다.

나. 한화증권은 2008. 4. 25.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과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내용의 스와프(Swap)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총 발행규모는 687,660개, 총발행액은 6,876,600,000원(개당 액면금 10,000원), 총 투자자는 약 437명이다. 대표당사자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그 발행일 무렵에 한화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상환기준일인 2009. 4. 22. 에스케이 보통주는 만기 상환기준가격(기준가격의 75%인 119,625원) 이상인 120,000원에서 124,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장 종료 무렵에 보유하고 있던 에스케이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라고 한다), 그 결과 에스케이 보통주

의 종가는 119,000원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대표당사자들 비롯한 투자자들은 만기일인 2009. 4. 27. 이후 한화증권으로부터 만기상환금으로 투자금의 약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았다.

마.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는 기초자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의하여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바. 만약 피고의 부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하므로, 총원들은 투자원금의 1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피고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투자원금의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받았을 뿐이므로 투자원금의 47.4%(= 122% - 74.6%)에 해당하는 금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으로 모집된 투자원금은 총 6,876,600,000원이므로, 피고가 총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그 중 47.4%에 해당하는 3,259,508,400원이다.

사. 피고는 총원들에게 3,259,5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0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외신고의 기간 및 방법

이 사건 소송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담당재판부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의 예납

대표당사자들은 이 사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담당재판부에 40,000,000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내역	고지비용	10,000,000원
	공고료	20,000,000원
	감정료	5,000,000원
	기타	5,000,000원

2015. 11. 16.

재판장 판사 최완주

판사 한성진

판사 민지현